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h1>보도설명자료</h1>	2017. 5. 18(목)	
		배 포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 양홍석 (Tel. 02-3145-6221)
* 엠바고 : 즉시 사용			

## 「이낙연 후보자 모친, 강남아파트 구입 4년 만에 2.4억 차익」 보도 관련 (오마이뉴스, '17.5.17)

### □ 보도내용

- 후보자 모친은 '01년 서울 강남 도곡동 우성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1억 7,200만원에 사고 '05년에 4억 1,500만원에 팔아서, 4년 만에 2억 4,300만원의 차익을 올림
- 동 아파트에 대해 '01년에 1억 6,000만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모친은 '03년 4월~9월 및 '04년 4월~'05년 2월까지 전입하였는데, 전입신고만 하고 모친은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 □ 설명내용

-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취득 및 '02년 재산변동신고 경위
  - 후보자의 셋째동생(이계연)은 '01년 8월 시골의 모친(당시 74세)을 서울에서 모시기 위해 모친의 명의로 同 아파트를 2억6,500만원에 매입(전세 1억6,000만원 승계조건) 하였음
  - 후보자는 직계존속인 모친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同 아파트를 '01년 12월말 기준으로 '02년 초에 재산변동신고\* 에 반영함

\* 아파트가액 1억7,200만원(기준시가), 전세채무 1억6,000만원 포함

- 후보자 모친의 아파트 매각 및 '06년 재산변동신고 경위
  - 당시 삼성화재보험에 근무하던 셋째동생(이계연)이 모친을 모시겠다고 하였으나 모친이 서울생활을 거부함
  - 후보자는 '04년 총선 과정에서 동생에게 조기매각토록 권유하여, '05년 3월에 매각하였음 (3년 7개월간 모친 소유)
  - 아파트 실제 매도금액은 4억1,500만원 이었으나, '06년 초에 재산변동신고('05년말 기준)를 하면서 당시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금액인 1억7,200만원과 함께 실거래가 4억1,500만원을 병기하여 신고하였음
  - 후보자 셋째동생(이계연)은 시세차익 1억5,000만원(실매입가 2억6,500만원, 실매도가 4억1,500만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489만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
- 참고로 후보자의 '03~'05년 재산변동신고서에 동 아파트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 가액변동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당시 규정에 따라 작성했기 때문임
  -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01.5.4) 별지2호 서식 재산변동사항신고서 : 부동산의 가액만이 증감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 형으로서 동생의 위법사항을 파악하여 조기매각 권유 등 조치를 취했지만,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함

- ※ (붙임) 1. '01년 8월 매매계약서 (매입 : 이계연 명의)
- 2. '01년 9월 현금수령증 (이계연 명의)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검 인

거래대상구분	소유 관계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문동 22-10				
토지 지목	현 황	면적	m <sup>2</sup> ( 평 )		
건물 구조·용도	면적	m <sup>2</sup> ( 평 )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금	원정( ₩ 2,900,000,000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서에 지불하고
중도금	금	원정은 2001년 9월 25일에
잔금	금	원정은 2001년 10월 28일에 지불한다.
용자금	금	원정( 3주대 은행 )을 승계기로 한다.

- 제2항의 매매대금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 제2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3조 [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입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 제5조 [부동산의 인도] ①매도인은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정원석·문·담장 등 기타건물 부속을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통상적인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전금)을 지불한 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 제8조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①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③공동중개인 경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보수를 지불할 공인중개사 1인을 지정하고 지정된 자에게 지불한다. 다만, 매도인 또는 매수인 각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각자의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매도인과 매수인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정한다.

특약사항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01년 8월 10일

매도인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문동 22-10 이계연		성 명	이계연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대리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매수인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문동 22-10 이계연		성 명	이계연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대리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공인중개사	사무소소재지			성 명		인
	사무소명칭	ONE STOP SERVICE!		성 명		
	대표			성 명		
	등록번호	전 화				

\* 거래당사자 확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현금수령증

채우라 권소임의 대리인  
이계연에게 채우라 김은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인양 은행  
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001년 9월 21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34-10 박스우체국 2-572

김  
은